

보증한도규정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정관상 보증의 총액한도 내에서 「보증한도규정」에 따라 전사운용한도를 운용하고자 함

2. 주요 제·개정 내용

전사운용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정하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사운용한도 내에서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 14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층 리스크관리실
- 담당자(이메일) : 이 현 대리(lh7921@khug.or.kr)
- 전화번호 : 051-998-6852
- 팩스번호 : 051-998-2250

4. 예고기간 단축사유(기간 20일 미달 시)

공사 전사운용한도 관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보증한도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장 보증한도의 운용 및 관리 제5조(전사운용한도) ① 전사운용한도는 정관상 총보증한도 내에서 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 보증한도로 한다. ② (생략)	제2장 보증한도의 운용 및 관리 제5조(전사운용한도) ① 정관 제59조 제1항에 따른 전사운용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로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사운용한도 내에서 세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사항 반영

보증한도규정

제정 2015. 5. 6

개정 2015. 6. 30(개폐정리)

개정 2017.12.22.(별표)

개정 2020. 8. 6(개폐정리)

개정 2020. 9. 9(개폐정리)

개정 2022. 2. 11.(별표)

개정 2023. 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9조에서 정한 공사의 총보증한도 내에서 보증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사운영한도, 고객별 보증한도, 보증별 보증한도 등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사운영한도”란 공사의 자기자본으로 감내 가능한 위험수준을 반영한 보증한도를 말한다.
2. “보증군별 총보증한도”란 공사가 운용하는 보증을 보증별 특성과 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증군으로 분류하고 보증군별 보증한도 총액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3. “고객포괄한도”란 고객이 공사의 전체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증한도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단위사업(보증서가 발급되는 당해 주택사업 등을 말한다)의 보증한도 등은 다른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증한도의 운용 및 관리

제4조(보증한도의 종류) 보증한도는 전사운용한도, 보증군별 총보증한도, 고객포괄한도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사운용한도) ①정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사운용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로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사운용한도 내에서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20. 9. 9, 개정 2023. 11.00.>
②제1항의 전사운용한도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증군별 총보증한도) ①보증군별 총보증한도는 제5조의 전사운용한도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②제1항의 보증군별 총보증한도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객포괄한도) ①고객포괄한도는 고객의 채무부담능력을 반영한 재무한도와 사업수행능력을 반영한 매출한도를 고려하여 별표1에서 정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의 고객포괄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증한도의 이용) 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7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한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증한도의 조정)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보증한도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증한도의 관리) 보증한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적용) 이 규정과 중복되는 다른 사규의 보증한도 관련 조항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단위사업의 보증한도 등은 다른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이사회규정[별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구 분	규 정 명
영 업	보 증 한 도 규 정

②사규관리규정 [별표] 사규분류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편 별	분 류	사규번호	사 규 명	소관부서
제9편	영 업	9-1-1	보증한도규정	영업기획실
		9-1-2	보증한도규정시행세칙	"

③심사위원회규정 제4조제1호의 대상규정에 “보증한도규정”을 추가한다.

④실무위원회규정 제4조제2호의 대상규정에 “보증한도규정”을 추가한다.

⑤보증규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2. 제6조제4항의 “제1항제1호의 보증”을 “PF보증”으로, 제6조제5항의 “제1항제4호의 보증”을 “임대주택리츠 PF 보증(P-ABS보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후분양대출보증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⑧임대관리보증규정 제12조를 삭제한다.

⑨단독주택보증규정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11>

이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00>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